

예술공간 오르다 대관규약

제정 2014. 9.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서울연극협회가 운영하는 창작공간 극장 '예술공간 오르다'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 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취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국내 소극장 공연예술 및 회원들의 공연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대관자에게 대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대관 승인을 받은 주최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부대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의 범위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4조 (종류)

대관 종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연대관 :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리허설대관 : 대관 기간 내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5. 녹음대관 :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7. 행사대관 : 단체나 모임의 행사를 위한 대관
8. 연습대관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대관

제2장 대관료

제1조 (산정)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회장이 정 한다.

제2조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총 대관료의 30%를 납부하고, 공연 1개월 전까지 잔금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장기대관의 경우 계약 담보금의 형식으로 계약금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최소한 공연 1개월 전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 부대설비의 추가 신청

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승인 후 추가되는 사용료의 경우 공연 종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해당 공연 시작 1주일 전 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4. 22:00 이후 심야공연이 발생할 경우, 대관료의 100%를 추가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
5. 대관 시간은 평일 16:00~22:00, 주말 및 공휴일 12:00~22:00이며, 이전이나 이후 사용은 별도로 계약해야 하며 서울연극협회가 별도로 정한 추가 대관료를 납부 후 사용해야 한다. (주말 공연을 포함한 추가 및 특별 공연 등)
6.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와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7. 대관 계약 체결이 1개월 이전일 경우, 공연장 대관일 7일 이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3조 (반환)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2.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3. 대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대관 취소 신청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1조 (신청)

대관 신청자는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를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2조 (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예술공간 오르다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단체 또는 개인
3. 제1장 2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단체 또는 개인
4.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1회 이상 한 단체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6.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예술공간 오르다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 (대관 승인)

1. 대관 신청 마감 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자에게 '대관승인서'(서식 제3호)과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신청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자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정한다.
4. 제3조에 1항에 의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서 명시한 일자까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대관규약에 의거하여 계약서(서식 제4호)를 체결해야 한다.
5.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 사용은 대관 계약 후 '부대설비 사용신청서'(서식 제5호)를 공연

스태프 회의 직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 제출해야 한다

6.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서 요구하는 준비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 (준비대관은 최소 2일을 원칙으로 함)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대관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

제1조 (홍보물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홍보용 포스터 및 극장 내 부착되는 사인물에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고, 홍보물 부착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지정한 규격의 홍보물을 내, 외벽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공연 기간 내로 한정한다.
3.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제2조 (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기본시설, 부대설비와 관련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대관자는 '공연장'의 대관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대관 신청한 공연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연장'의 대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할 경우 서울연극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대관자는 대관 중 발생한 시설물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서울연극협회의 손해에 대해 즉시 배상해야 한다.
4.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1주일 전까지 무대기술 스태프 회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요구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5. 대관자는 공연 게시일 전까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와 전단, 프로그램북을 제출해야 한다.
6. 공연장비 반입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극장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며,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한다.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정리 비용은 대관자(보증금)가 부담해야 한다.
7.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8. 공연 매표, 수표 진행요원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한다.
9.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가 진행 중인 문화게시판, 서울공연전단마케팅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인쇄물 및 온라인 홍보 이미지에 서울연극협회를 후원으로 표시한다.
10. 예술공간 오르다 객석 중 5석은 협회 유보석으로 사용된다. (단 1일 5장의 초대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
11.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 정회원에게 5,000원, 원로회원에게 무료로 공연 관람을 제공한다.
12. 예술공간 오르다의 관극회원DB는 예술공간 오르다의 공연 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13. 대관자는 예술공간 오르다에 속한 화장실, 로비, 매표소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해 청소, 관리 및 쓰레기 등 오물 처리를 책임진다.

제3조 (방송 중계 협의)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서 하는 공연의 방송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대관자는 이와 같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판단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입장제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승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취학 전 아동(만 6세)은 공연장 내에 출입을 금지한다. 단 공연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제5장 대관 및 공연 변경 금지 및 계약 해지

제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일정 변경 금지)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대관 계약 후 또는 공연 기간 중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공연물 임의 변경 금지)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 취소가 확정된 경우 서울연극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1. 대관승인 후, 제3장 1조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자가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대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제6장 회원제 및 입장권 발행, 판매

제1조 (자동매표시스템 사용)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추후 고유의 매표시스템 구축된 이후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현재 매표시스템은 미구축 상태)

제2조 (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

1.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원로회원 포함) 회원 제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2.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회당 최소 5석 이상의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 (단, 1일 5장의 초대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3조 (입장권 발행)

1.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서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2.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입장권 판매대행-고유 매표 시스템 구축 이후)

1. 대관자는 입장권 등급별 총 수량의 50% 이상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매표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 판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카드사, 전자상거래, 판매대행)는 정해진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한다.
2.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회원, 예술공간 오르다의 회원제에 한해 입장권 판매 시 회원할인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규약의 위반은 대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2. 본 규약은 2014년도 9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 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본 규약과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정한 안전 수칙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대관기간 중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 출입하는 대관자의 임직원, 고용인, 기타 대관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및 공연 고객 등(이하 '대관자 측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관자 측 당사자'에 대한 안전 및 손해발생의 방지는 전적으로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제2조 1항이 위반, 기타 '대관자 측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위 1항이 위반, 기타 '대관자 측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자 측 당사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발생하게 된 손해는 전적으로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이들로부터 소송 기타의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 대관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를 면책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손해에는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가 제3자의 청구 혹은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이 포함된다.

4.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자 혹은 '대관자 측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는 대관자로부터 수령한 금액(대관료)내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약 손해배상금액이 위 금액(대관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울연극협회/예술공간 오르다 대표 박장렬